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2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오세희 · 최혁진  
박희승 · 김한규 · 남인순  
김 윤 · 박정현 · 전진숙  
모경종 · 박홍배 · 김선민  
문진석 · 김우영 의원  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현재 ‘청소년전화 1388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·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,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·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.

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·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청소년전

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,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·보호·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.

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, 자살·자해 위험,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.

덧붙여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상담·교육 및 치료·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, 제12조의3,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).

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전화상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한다.
-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,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화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적시에 구조·보호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시스템을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,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 및 「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

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전화상담시스템의 자료·정보를 보유·관리·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⑨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·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, 제3항에 따른 전화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위기청소년 모니터링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·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(이하 “위기청소년 모니터링”이라 한다)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기청소년의 식별

2.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신고 또는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연계

3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

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으로 식별된 위기청소년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사,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8호 중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을 “전화상담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상담·교육 및 치료·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 지원

제43조제1항 중 “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”을 “제12조제7항 또는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) 성평등  
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  
에 따른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


<신 설>

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적시에 구조·보호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시스템을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,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 및 「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⑦ 전화상담시스템의 자료·정보를 보유·관리·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

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·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야 한다.

⑨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·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, 제3항에 따른 전화상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3(위기청소년 모니터링)

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·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(이하 “위기청소년 모니터링”이라 한다)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기청소년의 식별
2.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신고 또는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 체계 연계
3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청소년의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

제22조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 ① (생략)  
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 
 1. ~ 7. (생략)  
 8.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
 9. (생략)  
<신설>

할 수 있다.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으로 식별된 위기청소년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사,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 ① (현행과 같음)  
 ② -----  
 -----.  
 1. ~ 7. (현행과 같음)  
 8. 전화상담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-----  
 9. (현행과 같음)  
 10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상담·교육 및 치료·

<p>10. (생략)  ③ ~ ⑤ (생략)  제43조(벌칙) ① <u>제12조의2제9항</u>  을 위반하여 <u>통합정보시스템의</u> 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 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 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한다.  ② · ③ (생략)</p>	<p><u>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</u>  <u>지원</u> 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제43조(벌칙) ① <u>제12조제7항 또</u>  는 <u>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</u>  <u>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또는</u>  <u>통합정보시스템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